

범죄피해신고의 영향요소*

문장일**

목 차

- | | |
|-----------|-------------------|
| I. 서 론 |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
| III. 분석자료 | IV. 연구범위 및 변수설명 |
| V. 연구결과 | VI. 요약 및 제언 |

I. 서 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해 실시되었던 서울시 범죄피해조사 및 후속 전국 범죄피해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낮은 신고율은 알려져 있다¹⁾. 그러나 세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신고율은 어느 정도로 낮으며,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로써 이에 관한 답을 구하려 한다.

신고되지 않으면 범죄자가 최종적으로 처벌되기 어려워진다. 즉 처벌의 확실성이 낮아진다. 억제이론에 의하면 처벌의 확실성이 높을수록 범죄예방은 효과적이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신고율이 중요하게 된다. 나아가 신고율이 낮으면, 암역이 커지며 그 결과 공식범죄통계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피해의 신고 및 그 영향요소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범죄자가 처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1에서 나타낸 단계를 거친다.

* 심사위원 : 김선복, 김성돈, 송광섭

** 영남대학교 시간강사, 법학박사

1) 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조정희, 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범죄사건(A)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야 하며(B영역), 인지된 범죄사건 중 일정 부분에서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게 된다(D). 검사가 범죄사건을 기소하고(F), 최종적으로 형사피고인이 증거부족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않으면(H), 범인은 원칙적으로 처벌된다. 이 단계 중 B의 영역은 범죄자가 처벌되기 위한 첫 단추이며, 이 후의 D, F의 크기의 정도를 처음으로 결정한다. B, D, F, H의 단계는 선행단계에 제약되어 깔때기 모양으로 점차 작아진다. 이에 상응하게 C, E + C, G + E + C, 광의로는 I + G + E + C 등으로 정의되는 암역은 점점 커진다. B, D, F에서 자의적 선별이 문제되겠다. B 영역의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 인지되므로²⁾, 형사사법체제에서 신고가 중요하게 된다. 범죄피해 신고로써 민간이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최종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처음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정의의 한도에 제약되어 차후로 형사사법기관이 범죄를 정의 혹은 선별한다. 그래서 민간은 형사사법기관의 'gate-keeper'³⁾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신고율이 20%인 나라와 60%인 나라를 상정해 보면, 최종적으로 H영역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 크기나 첫 단계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에 있어서 신고가 중요하다. A에 비해 H의 영역이 적으면 적을수록 형법의 규범력은 약해진다.

<그림 1: 범죄의 발생에서 유죄판결까지의 흐름도>

경찰	A. 실제로 발생한 모든 범죄발생건수		
	B. 경찰에 인지된 범죄발생건	C. 인지되지 않은 사건	
검찰	D. 검거된 범죄사건	E. 범인불명사건	
	F. 공소제기	G. 불기소	
법원	H. 유죄판결	I. 무죄판결	

2) Steffen의(1976) 조사연구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형사재판의 91-98%가 신고에 의해 발단되었다. 경찰의 자발적 활동에 의한 경우는 단지 2-9%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Kaiser, Kriminologie, 10. Aufl., 1997, 143면에서 채인용).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2년의 범죄 수사의 단서는 형법범에서는 65.7%, 특별법범에 있어서는 41.1%가 신고에 기인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34면).

3) Hindelang/Gottfredson, The Victims Decision not to Invoke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McDonald (Ed.), Criminal Justice and the Victim (Vol. VI) Sage Criminal Justice System Annual, 1976, p. 58.

우리나라에서 중요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한 범죄에 한정하여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크게 보아 외부적 보상⁴⁾, 신고의무, 신고자 보호라는 세 요소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행동주의적 배경을 가진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범죄에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거나와 모든 범죄 신고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중점은 신고의무가 혹은 보상금이 없든 있든 상관없이, 범죄피해신고의 영향요소를 밝힘으로써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범죄피해신고의 영향요소로서 크게 보아 첫째, 범죄피해의 심각성, 둘째 신고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세째,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넷째 수사기관 특히 경찰에 대한 태도를 열거할 수 있다⁵⁾. 그 외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를 첨가시키기도 한다⁶⁾.

범죄피해의 심각성은 객관적 및 주관적 심각성을 포함한다. Fiselier는⁷⁾ 범죄 피해 심각성의 주관적 평가가 신고의 결정적 요소라고 한다. 그런데 이 주관적 심각성에 범죄의 두려움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고율이 높아진다는 Kury 등의⁸⁾ 연구결과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폐방지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정 (경찰청 훈령 제150호)

5) Schwind/Ahlborn/Weiß, Dunkelfeldforschung in Bochum 1986/87. Eine Replikationsstudie. *BKA-Forschungsreihe* Bd. 21 Wiesbaden: BKA, 1989, S. 227.

6) Rosellen, Private Verbrechenskontrolle -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zur Anzeigeerstattung, in: Forschungsgruppe Kriminologie (Hrsg.), Empirische Kriminologie; Freiburg 1980, S. 94.

7) Fiselier, Opfer von Straftaten - Art und Umfang der Kriminalität in den Niederlanden, in: Kirchhoff/Sessar (Hrsg.), Das Verbrechensopfer. Ein Reader zur Viktimologie, Bochum, 1979, S. 111 ff.

8) Kury/Teske, A Cross-National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Crime Seriousness on Reporting and Non-reporting of Crime Victimization, in: *The Hokkaido Law Journal*, Vol. XXXII No. 2, 1996, p. 404.

가 있었는데, 유독 이 범죄에서만 피해액의 정도와 신고여부 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피해액이 아닌 다른 요소로써 주거침입절도피해와 신고와의 연관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여기서 그들은 소득이 높은 계층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높아지므로 신고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객관적 심각성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는 비싼 물건이므로 객관적 심각성은 크고 따라서 자동차절도의 신고율은 매우 높다. 심각성의 관점에서 기수에서의 신고율은 미수 보다 높다. 폭력범죄에 있어서 무기·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심각도가 높다고 하겠다.

신고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관련하여, 괴팅엔 조사에 의하면 낮은 사회계층의 신고율이 가장 낮았으며, 높은 연령층의 신고율이 높았다. 반면, 성, 혼인 상태 등에 따른 신고율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⁹⁾. Reuband¹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신고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소년의 낮은 신고율의 해명에 관하여 그는 청소년은 공식적인 분쟁해결방식을 아직 배우지 못하였으므로 비공식적·개인적 분쟁해결방법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Villmow 등은 청소년에게는 경찰의 도움 없이 문제된 사건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고유한 하위문화규범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청소년의 신고율이 낮다고 설명한다¹¹⁾. 최근의 미국범죄피해조사를(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02) 본다면, 폭력범죄와 소매치기를 포함하는 개인범죄의 경우 여성의 신고율은 53.2%로 남성의 44.3% 보다 높게 나타난다. 개인범죄의 경우 연령층 '12-19'의 신고율이 가장 낮았으며,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가구범죄이며 재산범죄인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신고율이 높았다¹²⁾. 한편 스위스의 한 조사에서는 남성의 신고율이 여성 보다 오히려 높

9) Schwind/Ahlborn/Eger/Jany/Pudel/Weiß, *Dunkelfeldforschung in Göttingen 1973/74. Eine Opferbefragung zur Aufhellung des Dunkelfeldes und zur Erforschung der Bestimmungsgründe für die Unterlassung von Strafanzeigen. BKA-Forschungsreihe Bd. 2* Wiesbaden: BKA, 1975, S. 210.

10) Reuband, *Determinanten der Anzeigebereitschaft unter Opfern von Eigentumskriminalität, MschrKrim*, 1981, S. 219.

11) Villmow/Stephan, *Jugendkriminalität in einer Gemeinde*, 1983, S. 238.

게 나타나고 있다¹³⁾.

피해자가 도난보험에 가입하였고, 도난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조건 하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신고율이 높아질 것이다. 보험금 수령과 신고와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뒤따랐고¹⁴⁾, 양자의 관계가 Schwind 등의 조사에서 명백히 확인되었다. 여기서 도난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중 76.1%가 도난사건을 신고하였다. 반면 도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 중 단지 28.4%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¹⁵⁾. 미국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자동차, 주거침입절도의 피해 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신고하였다는 이유의 비중이 다른 범죄유형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⁶⁾.

경찰에 대한 주민의 태도와 관련하여, Schneider는 경찰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피해사건을 신고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렇지만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액이 높은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와 상관없이 단지 피해액이 결정적임을 발견하였다¹⁷⁾. 영국 범죄조사의 (British Crime Survey) 결과에서도 피해자가 경한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¹⁸⁾. 일상이론으로서 경찰에 대한 태도는 신고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그 증명은 간단치 않다. 소개한 연구들은 횡단적 조사방법에 의한 결론이다. 만약 경찰과의 접촉으로 혹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신고 후에 경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였고, 조사 때 바로 이것이 파악되었다면, 신고 전에 가졌던 경찰에 대한 태도와 신고행위와의 관련을 전혀 밝혀낼 수 없다. 다시 말해, 경찰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는 단지 조사 시의 태도를 반

-
- 12)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2 Statistical Table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December 2003, Tab. 92; Tab. 93a; Tab. 99.
 - 13) Stadler-Griesemer, A Victim Survey in the Swiss Canton Uri in 1984, in: Kaiser/Kury/Albrecht (Hrsg.), Victims and Criminal Justice. Victimological Research: Stocktaking and Prospects, 1991, S. 433.
 - 14) Harlow, Reporting Crimes to the Police, in: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Ed.). Special Report, 1985. pp. 8-9; Waller/Okihiro, Burglary: The Victim and the Public, 1978, p. 40.
 - 15) 전 계서 Schwind et al., 1989, S. 260.
 - 16) 전 계서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Tab. 101.
 - 17) Schneider, Victimization Surveys and Criminal Justice System Evaluation, in: Skogan (Ed.). Sample Surveys of the Victims of Crime, 1976, p. 143.
 - 18) Hough/Mayhew, The British Crime Survey: First Report, 1983, p. 12.

영할 뿐이다. 따라서 위에 소개한 결과들은 경찰에 대한 태도와 신고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옳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 보다 나은 방법은 이전의 경찰과의 접촉 경험의 여부에 따른 신고자와 비신고자의 경찰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한 조사에 의하면, 비신고자는 이전에 경찰과의 접촉에서 만족하지 못하였다¹⁹⁾. 나아가 경찰에 대한 태도는 정부의 다른 기관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조사보고도 있다²⁰⁾. 이는 경찰 자체만의 노력으로 경찰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넓게는 정부가 어떠한가가 여기서 중요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의 신고율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가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Hellmer의 동질성 이론에(Identitätstheorie)²¹⁾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는 그의 범죄리학적 관점의 조사 결과로부터 피해자는 그의 범죄자 혹은 지역과의 동질성 관념이 강할수록, 신고하기를 꺼린다고 추론하였다.

III. 분석자료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에 (UNICRI) 의해 제공되고 있는 국제 범죄 피해조사 및 필자가 실시하였던 부산시 범죄 피해조사의²²⁾ 두 전산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부산시 범죄 피해조사는 1997년 초반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16세 이상의 부산시민) 임의 추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703이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19) Sparks/Genn/Dodd, Surveying Victims, 1977, p. 118.

20) Albrecht/Gre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and the larger attitude complex. Implications for police-community relationships, in: *Criminology*, Vol. 15 No. 1, 1977, pp. 76-79.

21) Hellmer, Identitätstheorie und Gemeindekriminalität, in: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gerichtlichen Physik, Chemie und Medizin, 161. Band, 3. 1978, S. 17.

22) 독일 말로 소개된 논문으로 Mun, Kriminalität und Kriminalitätsstruktur in einer Großstadt Koreas (Pusan). Ein Vergleich mit europäischen Großstädten, in: *MschrKrim*, 2002, S. 230-242이 있다. 이 조사의 질문지는 문장일, 사회 범죄 현상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보완적 방법으로서 감지된 범죄, 영남 법학, 제8권 제1-2호, 2002, 347-379면을 보라.

는 처음으로 범죄피해 등에 관한 국제비교의 목적이 설정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국제범죄피해조사는(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s: 이하 ICVS로 약칭) 1989년 영국의 내무부 및 스위스의 로잔느대학의 협조 하에 네덜란드 법무부의 주관으로 시작되었고, 1991년엔 UNICRI가 동참함으로써 조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2000년 제4차 ICVS에 한 번 참가한 바 있다. 현재까지 세계의 70개국 이상이 조사에 참가하였다. 2004년에 제5차 ICVS가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동참 하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ICVS의 전산자료에서 나라별 최종 조사만을 선택하였다. 이리하여 총 70개국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여기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0년 전국표본으로 실시하였던 우리나라 범죄피해조사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분석에 포함된 ICVS 자료는 조사지역의 범위에 따라 전국표본, 수도표본, 기타로 분류되는데, 25개국에서 전국표본이었고, 42개국에서는 수도표본이었으며, 한 나라에서는 전국표본과 수도표본이 병합되었으며, 2 나라에서는 기타 표본이었다. 전국표본이 아닌 경우 그 나라를 대표하지 못하나, 이하의 분석에서 표기상 나라라고 표시하더라도 의미는 그 나라에서 실시된 지역을 대표한다. 국제비교의 관점, 즉 국제 범죄피해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범죄피해신고에 관한 우리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IV. 연구범위 및 변수설명

위의 두 분석자료로써 알려고 하는 것을 아래에 주제별로 묶어 열거하였다. 개별 분석자료에 따라 알 수 있는 범위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1. 나라별·범죄유형별 신고율

① 우리나라의 신고율이 ICVS에 참가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② 범죄유형에 따라 신고율의 차이가 있는가?

첫째 의문은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각각 1997년 및 2000년에 실시된 두 범죄피해조사가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제한적으로 후자의 조사는 연도의 초반기가 아닌 범죄피해의 준거기간으로부터(1999년 및 '지난 5년') 멀리 떨어진 2000년 중반기에²³⁾ 실시되었으므로, 이 조사에서 측정된 신고율은 이론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늦어진 조사시점에 기인하여 준거기간에 실제 발생하였던 경한 범죄는 망각되어 과소 대표되고 그 반대로 망각되기 어려운 중한 범죄피해는 과다 대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바로 이 중한 범죄피해의 신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2. 태도와 신고율

본 연구에서 '태도와 신고율'에서 말하는 태도는 첫째, '경찰에 대한 평가', 둘째, 새로 태도가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신고 후 '만족'여부, 셋째,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불만족 이유', 넷째, '불신고 이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 의문과 변수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아래에 기술한다.

① 나라별 경찰에 대한 평가는 그 나라의 신고율을 잘 설명하는가? 다시 말해 경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나라일수록 신고율이 높은가?

② 우리나라 국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떠한가?

③ 주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는 주민의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획단적 연구방법으로써는 경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신고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 차선책으로 최상위 단계에서(즉 국가단위) 경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나라일수록 신고율이 높은가를 살펴봄으로써 경찰에 대한 평가가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경찰에 대한 평가'는

23) 조사기간은 2000년 6.28-7.21일. 전개서 장준오, 2000, 27면.

ICVS에서 한 문항으로 파악하였다²⁴⁾. 이렇게 한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부산조사에서는 ‘친절성’, ‘호감’, ‘형평성’, ‘봉사성’, ‘위기개입’의 총 다섯 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척도로써 경찰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부산조사와 ICVS의 결과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없다. 나아가 부산조사에서는 경찰에 대한 평가가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무관한가를 알려고 하였다. 다른 정부기관은 법관이었다. 법관에 대한 평가도 네 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척도로 파악하였다. 이로써 경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를 알려고 하였다.

ICVS에서는 1996년부터 기본 범죄유형 중 다섯 가지 범죄의 최후 사건에 한 정해서 피해자였고, 피해사건이 신고된 경우 경찰의 사건처리에 대해 응답자가 만족하였는지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응답된 경우, 그 불만족의 이유를 폐쇄형 질문으로써 물었다. 이유는 범주형이 아니고, 개별범주를 각각 이분형 질문으로 분리하여 구성되었다. 부산조사에서는 모든 신고된 사건에서 만족여부와 나아가 그 정도를 물었으며, 설문대상자가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하면, 불만족 이유를 개방형 질문으로 파악하였으며, 범주화 작업은 따라서 조사 후에 행해졌다. 나라별 만족하였다는 응답비율은(만족율) 그 나라 경찰의 한 성적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만족율은 단순히 신고된 사건에 종속적인 것만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만족율은 신고율의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고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관행이, 정부의 경찰에 대한 어떠한 개혁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변하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관행이 급격히 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즉 만족율은 시간의 변화에 덜 민감한 요소이며, 언급한 ‘경찰에 대한 평가’만큼 한 나라의 경찰의 성적을 잘 반영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최상위 단위에서 나라별 만족율을 독립변수로 나라별 신고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24) Taking everything into account, how good do you think the police in your area are at controlling crime? Do you think they do a very good job, a fairly good job, fairly poor job or a very poor job? (질문지는 다음의 저서에 게재되어있다: Van Kesteren/Mayhew/Nieuwbeerta, Criminal Victimization in Seventeen Industrialised Countries: Key-findings from the 2000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the Hague, Ministry of Justice, WODC, 2000)

양자의 관련을 관찰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만족여부는 ‘경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만족율과 ‘경찰에 대한 평가’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다음의 의문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만족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신고율이 높은가?

⑤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는 신고된 사건의 경찰의 처리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였는가? 만족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떠한가?

⑥ 만족율과 경찰에 대한 평가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가?

⑦ 우리나라의 불만족 이유들의 분포는 어떠한가? 외국과의 차이가 있는가?

부산조사에서는 ICVS와는 달리 피해사건의 신고여부뿐만 아니라 누가 직접 신고하였는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직접 신고자의 만족여부로써 신고자와 경찰관의 상호작용이 어떠하였나를 ‘관찰’이 아닌 방법이라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로써 다음의 의문을 밝힐 수 있다.

⑧ 누가, 어떤 사회인구학적 특질의 신고자가 경찰과의 접촉에서 만족하지 못하였나?

ICVS에서는 다섯 범죄유형에서 신고 동기와 불신고 동기를 파악하였다. 부산조사에서는 단지 후자만 그렇지만 모든 범죄유형에서 파악하였다. 신고 및 불신고 이유의 파악에 있어서 ICVS에서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나라 간의 비교가 용이하다. 반면 그 나라에 고유한 특징을 알기 어렵다. 부산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써 불신고 이유를 파악하였고, 조사 후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되는 범주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부산조사로써 피해자가 왜 신고하지 않았나에 관해 우리 고유의 이유를 알 수 있다. 구체적 의문은 다음과 같다.

⑨ 우리나라에서의 신고이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

⑩ ICVS 자료상 우리나라의 불신고 이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차이가 있는가?

⑪ 부산조사에 나타나는 불신고 이유에 범죄피해신고의 영향요소로서 주민의 고유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가?

3. 주관적·객관적 심각성과 신고율

ICVS에서는 모든 범죄유형의 최후 피해사건에 있어서 피해의 주관적 심각성을 파악하였다²⁵⁾. 부산조사에서는 주관적 심각성을 파악하지 않았다. ICVS에서는 재산범죄의 객관적 심각성의 지표인 피해액을 제한된 범죄유형에서만 파악하였고, 나라마다 화폐단위의 차이로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객관적 심각성을 통일적으로 비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부산조사에서는 원래 준거기간에서 발생한 피해총액의 추정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재산범죄 피해의 피해액을 파악하였다. 심각성과 신고율에 있어서 구체적 의문은 다음과 같다.

- ① 범죄유형별로 상이한 주관적 심각성이 범죄유형별 신고율의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는가?
- ② 주관적 심각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신고율이 높은가?
- ③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액과 신고율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가? 즉 피해액이 클수록 신고율이 높은가?

4. 신고자의 특징

ICVS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범죄피해조사에서 어떤 특질을 가진 사람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하는 경향이 높은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애당초 이에 관한 의문이 연구설계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즉 여기서는 단지 피해사건이 신고되었나만 파악되고, 구체적으로 누가 신고를 하였나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고자의 특질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타 범죄피해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조사에서는 누가 신고하였는가를 파악하였는데, 그럼으로써 신고자의 특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범죄피해신고의 영향요소로서 사회인구학적 특질에 관한 것이다.

25) 질문은 가구범죄인가 개인범죄인가에(괄호 안)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Taking everything into account, how serious was the incident for you (or your household). Was it very serious, fairly serious, or not vary serious?

V. 연구결과

1. 신고율

아래 도표 1에서 70개국의 신고율을 범죄유형별로 나타내었다. 한 논문이나 보고서에 모든 나라의 신고율을 한꺼번에 보고된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아래 도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신고율을 큰 지역별로 보면, 북미·오세아니아 53%, 서유럽 49%, 아프리카 37%, 중·동 유럽 36%, 아시아 27%, 남미의 25% 순이다. 아시아의 신고율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신고율은 18%로 70개국 중 65위로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도표 1).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39%), 중국(37%)의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97년의 부산조사에서 부산의 신고율은 11%로 나타난 바 있다. 우리나라나 부산의 낮은 신고율은 벌써 주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신고율 외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제외한다면, 우리나라는 경찰 보다 사경찰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전체로 보아(제일 아래 행) 자동차절도, 오토바이 절도, 주거침입/주거침입절도의 범죄유형에서는 신고율이 높고, 성범죄와('sexual incidents') 신체적 공격/협박에서는 낮다. 범죄유형에 따라 신고율이 상이한 이러한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였다. 단지 우리나라의 신고율은 모든 범죄유형에서 국제평균신고율 보다 낮았다.

<도표 1: 나라별 신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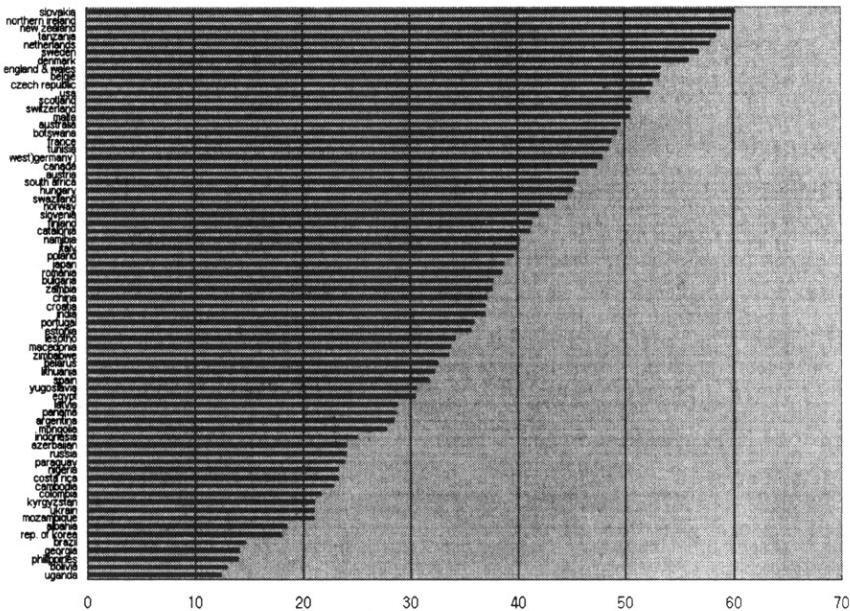
	자동차 절도	자동차 부품/ 차내 물건절 도	자동차 손괴	오토 바이 절도	자전거 절도	주거 침입/ 주거 침입 절도	강도	개인 소유물 절도	성범죄	신체적 공격/ 협박	총
England & Wales	89	71	43	94	69	90	59	49	14	41	53
Scotland	89	69	47	100	78	91	68	58	23	41	51
Northern Ireland	95	61	44	100	64	86	73	30	22	55	60
Netherlands	94	77	49	90	66	91	63	50	17	42	58

West Germany	89	82	44	93	72	79	50	38	11	21	48
Switzerland	87	71	43	80	74	89	50	45	10	33	51
Belgie	97	71	39	91	70	92	47	56	11	30	53
France	91	64	49	78	35	73	32	51	26	34	49
Finland	96	69	51	100	54	71	67	37	1	26	41
Spain	79	33	19	92	58	77	32	46		25	32
Norway	75	58	37	83	45	78	36	31	5	29	43
Sweden	98	76	57	85	61	71	71	47	12	36	57
Italy	95	40	15	77	29	65	42	43	5	24	40
Austria	100	79	33	100	70	79	60	52	7	22	46
Malta	97	56	28	71	66	77	27	37	23	37	50
Portugal	76	41	23	57	32	59	40	34	16	33	36
Denmark	98	75	43	76	67	88	73	51	12	30	56
Catalonia	91	43	22	82	39	71	57	54	13	27	41
USA	95	61	48	71	54	71	69	31	15	53	52
Canada	99	58	47	34	50	80	41	28	18	35	47
Australia	92	53	36	70	63	81	60	38	14	43	50
New Zealand	97	64	36	89	87	89	49	50	12	42	60
Estonia	86	40	35		36	63	40	30	11	25	36
Poland	92	47	28	69	50	62	40	26	18	32	40
Czech Republic	95	64	34	88	77	70	45	40	20	30	53
Slovakia	99	67	39	100	70	73	43	49	28	35	60
Russia	88	24	12		28	68	30	15	14	27	24
Georgia	47	11	5	50	9	49	19	6	15	14	14
Slovenia	91	71	30	76	51	62	47	38	8	34	42
Latvia	87	32	21	35	33	74	34	15	20	26	29
Romania	87	48	32	100	35	76	32	19	13	26	38
Hungary	93	58	29	82	60	79	30	32	5	15	45
Yugoslavia	94	43	16	100	38	72	38	22	6	26	31
Albania	70	21	15	31	17	37	16	8	3	19	18
Macedonia	82	40	20	49	59	65	41	37	16	33	34
Croatia	95	62	19	93	37	64	55	50	16	27	37
Ukrain	81	27		45	33	66	31	15	4	21	21
Belarus	83	35	22	40	38	63	40	14	8	22	32
Bulgaria	89	36	20	53	15	74	48	18	7	21	38
Lithuania	90	36	21	48	38	50	44	19	5	24	32
Japan	61	42	21	70	36	60	31	39	11	21	39

Indonesia	81	23	8	76	11	19	24	33	7	9	25
Philippines	40	15		50	8	20	16	5	8	25	14
India	100	83	66	96	99	69	54	25	8	30	37
China	100	30		82	47	50	17	21	5	31	37
Mongolia	90	30	26	100	28	74	37	10	3	28	28
Kyrgyzstan	93	31	15	68	10	58	25	7	10	15	21
Azerbaijan	66	27	19		17	35	47	6		31	24
Cambodia	100	5	9	66	13	15	57	10	5	31	23
Rep. of Korea	74	10	10	50	5	36	31	16	5	19	18
Uganda	75	19	30	67	28	24	14	5		9	12
Egypt	74	50	24	66	23	55	38	21	2	23	30
South Africa	91	52	57	44	23	62	37	29	39	30	45
Tanzania	90	75	62	95	76	81	60	30	28	47	58
Tunisia	88	69	46	85	43	62	40	33	33	49	48
Zimbabwe	100	56	45	41	75	72	42	22	8	15	34
Botswana	84	66	61	100	31	70	38	34	11	24	49
Namibia	92	56	33	100	32	61	28	14	10	23	40
Swaziland	92	54	58	67	41	83	49	25	12	23	45
Lesotho	86	32	48	100	21	61	27	17	13	30	34
Nigeria	90	29	22	67	43	45	37	13	10	18	23
Zambia	96	44	37	50	45	60	27	13	14	23	38
Mozambique	86	13	23	55	11	26	13	10	16	19	21
Costa Rica	83	18	16	81	19	37	24	16	6	26	23
Brazil	96	13	5	100	2	48	17	1	3	3	15
Argentina	93	22	10	71	11	30	35	22	6	24	28
Bolivia	87	13	10		22	26	11	2	5	11	13
Paraguay	98	25	5	93	42	42	21	22	1	43	24
Colombia	81	18	11	72	17	42	19	16	5	18	22
Panama	84	27	20	100	27	43	31	25	24	30	29
모든 나라	90	48	31	73	47	59	36	26	11	29	38

■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되었던 ICVS 중 나라별 최종 조사만의 신고율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ICVS의 보고서의 계산방법에 따랐다.

<그림 2: 각국의 신고율>



2. 태도와 신고율

1) 경찰에 대한 평가와 신고율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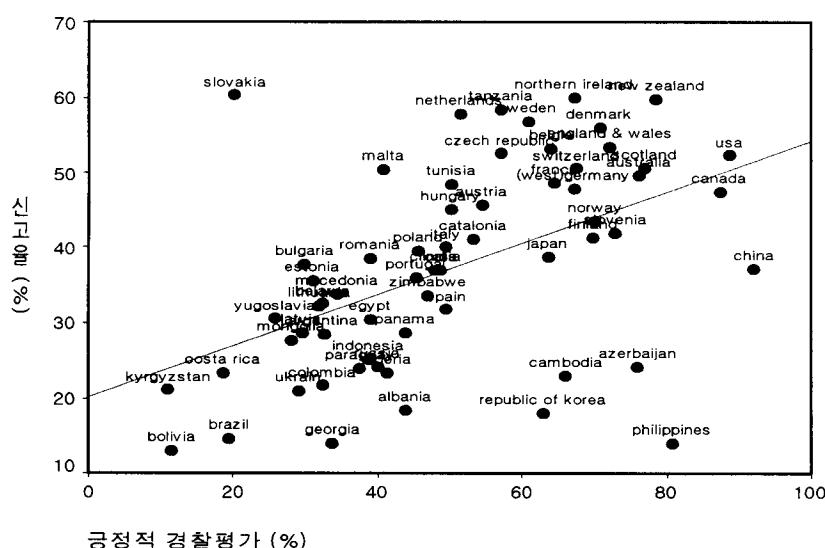
80년대 초반에 국제적 비교를 위한 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조사에 미국의 텍사스주,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스위스의 쥬리히 및 우리주, 혼가리의 바라냐주가 참가하였다. 상이한 학술지에 보고된 신고율과 경찰에 대한 평가를 모아 이를 매치시켜 보았다²⁶⁾. 그 결과는 예컨대 텍사스주에서 주민의 경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2.3%로써 가장 높았는데, 이에 상응하게 신고율도 가장 높았다. 한편 혼가리의 바라냐주에서는 경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28.8%) 낮았으며, 상응하게 신고율도(24.3%) 낮았다. 사례가 단지 다섯 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평가와 신고율의 상관계수를 보면 r

26) Mun, Opferbefragung in der koreanischen Großstadt Pusan. Freiburg i.Br.: MPI-Eigenverl. 2004.

= .94로 매우 높았다. 경찰에 대한 평가와 신고율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경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주일수록, 신고율이 높았다.

ICVS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3%로 국제평균 53% 보다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이 변수가 파악된 62개국 중 21위로 중상위권이었다. 큰 지역별로 보아 북미·오세아니아에서 경찰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었고(82%), 다음으로 아시아(64%), 서유럽(62%), 아프리카(46%), 중·동 유럽(41%), 남미의(30%) 순이다. 앞서 본 대륙별 신고율을 고려하여 말하자면 아시아에서는 낮은 신고율에 비해 경찰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경찰에 대한 평가는 92%로써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각각 63%와 64%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가를 단위로 한 신고율과 경찰에 대한 평가의 상관계수는 $r = .50$ 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 하였다($p < 0.01$; $n = 62$). 결론적으로 경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나라 일수록 신고율이 높았다. 이것은 앞서 소개한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론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회귀선상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하나의 예외를 이루고 있다. 즉 경찰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나, 신고율은 낮았다.

<그림 3: 나라별 경찰에 대한 평가와 신고율의 산점도>



위의 정적 상관관계로부터 신고율 제고를 위해 경찰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만 노력하면 긍정적 경찰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료가 집적되어 있다. 일찍이 Jacob은(1969) 주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와 법관에 대한 평가는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²⁷⁾. 이어서 Albrecht 등은 경찰에 대한 평가는 사법부에 대한 평가, 정치적 소외감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²⁸⁾. 부산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와 법관에 대한 평가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r = .48$; $p < .000$). 결국 경찰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제 기관 넓게는 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경찰만의 노력으로써는 경찰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측정방법이 ICVS와 다르지만, 부산조사의 결과에서는 시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 볼 수 없었다:

- “경찰은 부유하고 권력있는 사람이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형평성)에 대해 이분하여 보고한다면, 부산의 응답자의 16.5%만이 긍정하였다.
-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다”(호감)에 대해 응답자의 37.1%가 긍정하였다.
-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경찰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방어 할 수 있다”(위기개입)에 대해 응답자의 46.8%가 긍정하였다.
- “경찰은 시민의 봉사자라는 역할을 잘 해 왔다”(봉사성)에 대해 응답자의 44.7%가 긍정하였다.
-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친절하다”(친절성)에 대해 응답자의 44.8%가 긍정하였다²⁹⁾.

비록 오래된 조사이기는 하나 독일 스튜트가르트에서는 ‘형평성’에 대해 시민의 52.5%, ‘호감’에 대해 95.5%, ‘친절성’에 대해 95.1%, ‘위기개입’에 대해서는

27) 전계논문 Albrecht/Green, 1977, p. 80에서 재인용.

28) 전계논문 Albrecht/Green, 1977, pp. 76-79.

29) 척도구성을 위한 예비조사결과도 이와 매우 비슷하게 나왔다. 예비조사의 부분적 결과는 국제 신문 1997.3.4일 “경찰 공정성 80%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다.

63.3%가 긍정하였다는 결과가 있다³⁰⁾. 네 관점의 비교에서 부산에서의 경찰에 대한 평가가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부산시민은 특히 경찰의 형평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다음으로 경찰에 대한 평가를 척도치로 관찰해 본다. 경찰에 대한 평가는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경찰에 대한 평가가 연령별 주 16-19에서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점층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사회계층의 지표인 소득과 학력은 경찰에 대한 평가와의 양변수 관계에서는 일관된 방향을 나타내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혹은 학력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범죄피해빈도의 변수들로써 통제하였을 때, 소득과 경찰에 대한 평가와의 연관은 사라져 버렸다. 마지막으로 신고자와 비신고자의 경찰에 대한 평가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그 이유는 ‘II’에서 말하였다.

2) 만족율과 신고율의 상관관계 (ICVS)

아래 그림 4에 나라를 단위로 하여 만족율과 신고율의 산점도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만족율은 17%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불리비아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한다. 부산조사에서는 만족율이 27.9%로 나타났다. 만족율은 서유럽 및 북미의 국가들에서 특히 높았다. 예컨대, 덴마크의 만족율은 77%, 페란드 74%, 미국 65% 등이다. 일본에서의 만족율은 45%로 이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이 변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나라를 단위로 한 점들은 회귀선에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점은 회귀선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만족율과 신고율의 상관계수는 $r = .67$ 로써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p < 0.01$; $n = 60$). 이 상관계수는 경찰에 대한 평가와 신고율 간의 상관계수 보다 크다. 이 결과는 한 나라의 신고율은 경찰이 신고된 사건의 처리방식에 피해자가 만족하였나의 여부에 크게 종속적임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한 나라의 신고율 예측을 위한 회귀방정식을 구해보는 것이 의미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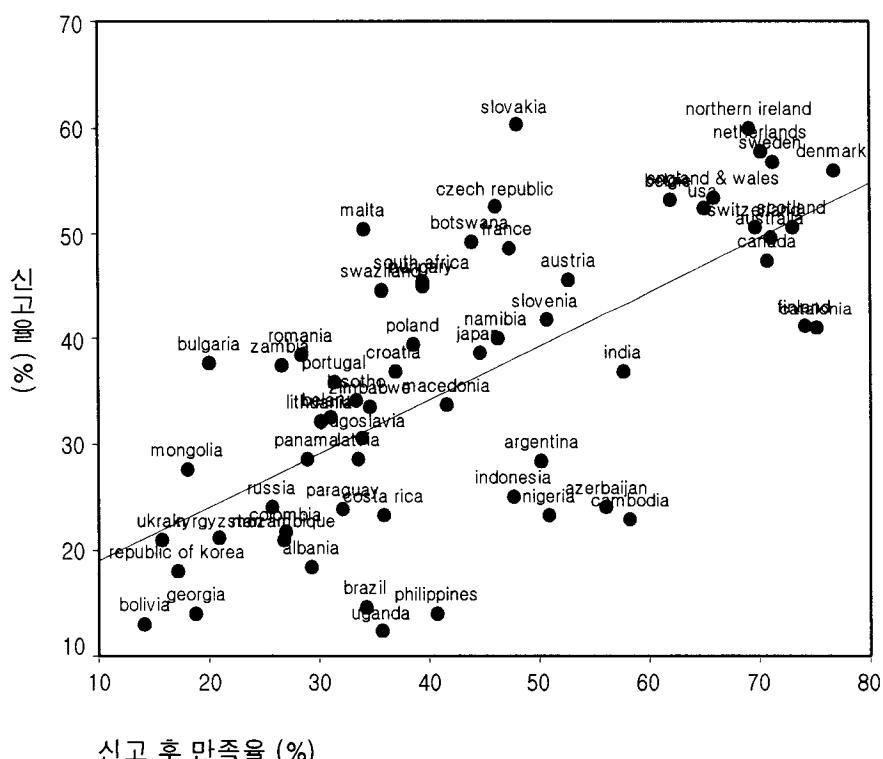
30) Stephan 1976, Die Stuttgarter Opferbefragung. *BKA-Forschungsreihe* Bd. 3 Wiesbaden: BKA, S. 423 ff.

것이다. 종속변수 신고율은 독립변수 만족율과 다음의 관계에 있다:

$$Y = 0.5 X + 13.7$$

이 방정식에 의할 때 나라의 신고율을 10%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율을 20% 높여야 한다. 신고 후 경찰의 사건처리에 대한 개별 주민의 만족여부는 가족, 친구, 이웃에 전파된다고 볼 수 있다. IV에서 논의된 대로, 만족율은 결국 경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자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양자의 상관계수는 $r = .72$ 로써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p < 0.01$; $n = 52$). 결론적으로 말해 경찰에 대한 만족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찰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그림 4: 나라별 만족율과 신고율의 산점도>



(1) 신고자 특징별 불만족율

IV에서 언급되었듯이 부산조사에서는 직접 신고자 및 그의 만족여부가 파악되었는데, 성별에 따른 만족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도표 2). 반면 낮은 연령층의 불만족율은 높은 연령층 보다 높았다. 나아가 교육 혹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만족율이 낮았다. 이 결과로써 지위차이가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은 하류층 출신인데, 공직 기관 담당자로서 이에 부여된 권력적 지위와 경찰관 개인의 사회계층에 기인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 양 지위 간에는 괴리가 있다. 이 괴리는 경찰관이 그와 동일한 계층의 주민을 상대할 때에는 활성화되지 않으며, 그보다 높은 계층과 상대할 때는 활성화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경찰과 주민과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발생한다³¹⁾.

<도표 2: 신고자 특징별 불만족율>

특 징		불만족율 (%)
성별	여자	60.0
	남자	77.8
연령별	16-39	89.5
	40세 이상	33.3
교육수준별	낮다	33.3
	높다	81.8
소득수준별	낮다	50.0
	높다	77.8

(2) 불만족 이유

31) Fischer-Kowalsky/Leitner/Steinert, Statusprobleme zwischen Polizei und Bevölkerung und ihre Bewältigung in der Produktion einer unteren Unterschicht, in: Brusten/Feest/Lautmann (Hrsg.). Die Polizei - Eine Institution öffentlicher Gewalt, 1975, S. 108; 경찰을 대상으로 하였던 조사결과로부터 지위차이가설이 옳다는 추론에 관해서는 Waldmann 1977, Organisations- und Rollenkonflikte in der Polizei. Ergebnisse einer Meinungsbefragung, in: *MschKrim* 1977, S. 78-81.

불만족 이유에 관한 결과를 우리나라, 서유럽, 세계 평균으로 나누어 아래 도표 3에 나타내었다.

<도표 3: 불만족이유 (%)>

불만족 이유	우리나라	서유럽	세계 평균
① didn't do enough	41	48	48
② were not interested	48	36	37
③ did not find or apprehend the offender	41	21	33
④ didn't recover my property (goods)	44	18	29
⑤ didn't keep me properly informed	26	18	15
⑥ didn't treat me correctly/were impolite	8	13	12
⑦ were slow to arrive	11	11	9
⑧ other reasons	2	19	6
⑨ do not know	1	0.4	1

■ ‘자동차 부품/차내 물건절도’, ‘주거침입/주거침입절도’, ‘강도’, ‘성범죄’, ‘신체적 공격/협박’의 다섯 범죄유형 전체로 관찰한 것임. 복수응답이 허용되었음.

세계적으로 보아 경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써 ① ‘경찰이 사건처리에 성실하지 않았다’, ②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 ③ ‘범인을 잡지 못했다’, ④ ‘손해를 회복해 주지 못했다’의 첫 네 범주가 중대한 것으로 나타난다(도표 3). 우리나라와 서유럽을 비교하여 본다면, 서유럽의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네 범주에서 그 크기가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경찰이 ②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의 이유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첫 네 범주들이 40%대로 대체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네 관점에서 두루 불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아울러 불만의 정도가 높았다는 것도 시사한다. 부산조사에서는 불만의 여부뿐만 아니라 강도도 파악하였는데, ‘약간 불만족’ 29%, ‘보통 불만족’ 26%, ‘매우 불만족’ 45%로 나타났는데, 강도 높은 불만족인 ‘매우 불만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조사에서는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성의가 없다/대충처리한다’ 77.4%, ‘아무런 연락이 없다’ 12.9%, ‘범인을 잡지 못했다/내 물건을 찾아주지 못했다’

3.2%, ‘늦게 왔다’ 3.2%, ‘불친절하다’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서 ‘성의가 없다/대충처리한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범주는 도표 3에서의 ICVS의 범주 ①과 ②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산과 우리나라의 결과는 빈번히 응답된 불만족 이유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이다. 그 외 개방형 질문으로 파악하여 사후 구성된 부산조사의 범주는 ICVS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신고이유

범죄피해를 보고한 응답자에 대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경우, ICVS에서는 신고한 이유를 물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신고자들의 신고이유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범주는 ①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기 위해’, ④ ‘범죄자가 체포되어 처벌받아야 한다’, ③ ‘마땅히 신고하여야 한다/피해가 커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세 범주에서 우리나라의 수치는 서유럽이나 세계평균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반면 ②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단지 2%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국가군 중에서는 서유럽에서 32%로 가장 높았다. 그 외 ⑤ ‘범죄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⑥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⑦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하여’의 범주들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치가 서유럽이나 세계평균 보다 대략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⑦의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외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함이 확인되었다.

<도표 4: 신고이유>

신고이유	우리나라	서유럽	세계평균
① to recover property	43	30	39
② for insurance reasons	2	32	22
③ crimes should be reported / serious event	46	38	36
④ wanted offender to be caught/punished	42	33	38
⑤ to stop it happening again	55	25	28

⑥ to get help	34	12	15
⑦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offender	13	8	8
⑧ other reasons	1	11	5
⑨ don't know		1	1

■ ‘자동차 부품/차내 물건절도’, ‘주거침입/주거침입절도’, ‘강도’, ‘성범죄’, ‘신체적 공격/협박’의 다섯 범죄유형 전체로 관찰한 것임. 복수응답이 허용되었음.

4) 불신고 이유

우리나라, 서유럽 및 전체 나라의 불신고 이유의 분포를 아래 도표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두드러진 차이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56%), ③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부적절하여’(26%) 및 ⑦ ‘경찰도 손 못 쓸 것이다/증거 없다’의 이유가 많이 응답되었다. 한 공통점으로서는 ⑩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물었다.

<도표 5: ICVS의 불신고 이유>

불신고 이유	우리나라	서유럽	세계 평균
① not serious enough/no loss/kid's stuff	56	42	33
② solved it myself/perpetrator known to me	17	13	14
③ inappropriate for police/police not necessary	26	10	13
④ reported to other authorities instead		2	2
⑤ my family solved it	10	2	5
⑥ no insurance	1	1	2
⑦ police could do nothing/lack of proof	25	15	23
⑧ police won't do anything about it	15	11	21
⑨ fear/dislike of police/no involvement wanted with police	3	2	5
⑩ didn't dare (for fear of reprisal)	2	3	5
⑪ other reasons	5	16	9
⑫ don't know	1	3	3

■ ‘자동차 부품/차내 물건절도’, ‘주거침입/주거침입절도’, ‘강도’, ‘성범죄’, ‘신체적 공격/협박’의 다섯 범죄유형 전체로 관찰한 것임. 복수응답이 허용되었음.

ICVS상 우리나라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산조사에서도 ‘피해가 적다’가 37%로 불신고의 가장 큰 이유였다(도표 6). 다음으로 경찰과 관련된 이유가 23%로 뒤따르고 있다. 나아가 ‘범인이 같은 동네, 학교, 직장의 아는 사람’일 경우(5%) 신고하기를 꺼렸다. 이는 Hellmer의 동질성이론으로써 해명될 수 있겠다.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불신고의 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어린이, 학생, 젊은 범인에 대한 고려’: 3%). 부산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파악하였으므로, 고유한 범주가 드러났다. 범주 ‘내 책임’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므로’는 외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범주이다. 이 범주들은 경찰에 기대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체념을 시사한다. 위의 ICVS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산조사에서도 ‘보복이 두려워서/불편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로 드물었다.

<도표 6: 부산조사에서의 불신고이유>

순위	불신고 이유	%
1	피해가 적다	37
2	경찰이 범인을 잡을 수 없다/도난당한 물건 찾을 수 없다: 14.9%, 번거롭다: 6.5%, 경찰과의 부정적 경험/불친절: 1.6%, 경찰이 관심 없다: 0.2%	23
3	그냥	6
4	범인은 같은 동네, 학교, 직장의 아는 사람	5
5	내 책임	4
6	스스로 해결/경찰이 할 일 아님	3
7	어린이, 학생, 젊은 범인에 대한 고려	3
8	증거가 없어서	3
9	자주 일어나는 일이므로	3
10	시간이 없어서	2
11	다른 곳에 신고 (예: 아파트 경비실)	2
12	보복이 두려워서/불편할 것 같아서	2
13	도난당한 물건을 찾았으므로	1
14	기타	6
15	무응답	1
	총	100

- 부산조사에서 파악된 모든 범죄유형의 불신고 이유를 한꺼번에 관찰하였다음.

3. 범죄피해의 심각성과 신고율

1) 주관적 심각성과 신고율

범죄피해의 주관적 심각성은 범죄유형별 신고율을 비교적 잘 설명하였다. 선택한 ICVS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아, 10가지의 범죄유형에서 그 주관적 심각성이 클수록 신고율이 대체로 높았다($r = .51$). 예컨대 범죄유형 ‘자동차 절도’, ‘오토바이 절도’에서는 높은 심각도에 상응하게 신고율도 높았다. 반면 ‘자동차 손괴’, ‘자동차부품/차내 물건절도’에서는 낮은 심각도에 상응하게 신고율도 낮았다. 한 예외로 ‘성범죄’에 있어서는 주관적 심각성은 높았으나, 신고율은 낮았다. 반면 기대와는 달리 나라별 심각도의 평균은 그 나라 전체 신고율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다. 양자의 상관계수는 영에 가까웠다. 기대에 벗어난 이 결과는 주관적 심각성의 측정도구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ICVS에서 주관적 심각성의 정도를 단지 3 범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2) 객관적 심각성의 지표로서 재산범죄의 피해액과 신고율

부산조사에서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7가지의 범죄유형의 모든 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정도를 금액으로 파악하였는데, 아래 도표 7에서 보듯이 피해액이 높을수록 신고율은 점증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피해액이 3만원 이하일 때의 신고율은 단지 2.5%에 그쳤으나, 피해액이 20만원 보다 클 경우는 37.3%로 높아지고 있다. 재산범죄의 유형별로 정렬하여 관찰하여도 마찬가지였다. 즉 범죄유형별로 신고된 사건의 평균피해액은 신고되지 않은 사건의 평균 피해액 보다 높았고, 전체로 보아 평균 4.2배 높았다. 결론적으로 피해액이 신고의 한 결정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액을 높인다는 정책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연히 신고율이 높아질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높은 소득에 상응하게 절도 대상물의 재산적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통된 다섯 재산범죄유형을 토대로 부산과 서독의³²⁾ 피해액을 비교해 볼 수 있었는

데, 서독의 평균피해액이 부산 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도표 7: 재산범죄의 피해액의 범위에 따른 신고율>

피해액의 범위	신고율 (%)	사례수 (n)
0 < x <= 30	2.5	79
30 < x <= 95	4.5	66
95 < x <= 200	11.6	86
200 < x	37.3	59

4. 신고자의 특징

부산조사의 결과를 보면, 남자의 신고자율이³³⁾ 여자의 신고자율(도표 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령층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³⁴⁾ 신고자율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연령층이 높을수록 점증적으로 신고자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낮은 연령층에서의 개인범죄의 피해율은 가장 높았지만³⁵⁾, 신고자율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신고자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유형 주거침입절도/주거침입에 있어서도 소득이 높은

32) 서독의 피해액은 Kury/Dörmann/Richter/Würger, Opfererfahrungen und Meinungen zur Inneren Sicherheit in Deutschland. Ein empirischer Vergleich von Vilktausungen, Anzeigeverhalten und Sicherheitseinschätzung in Ost und West vor der Vereinigung, BKA-Forschungsreihe Bd. 25 Wiesbaden: BKA. 1992, S. 97, 62, 70, 111, 121의 보고를 토대로 계산하였음.

33) ICVS의 연구설계는 최후 피해사건의 집합이 모든 피해사건의 집합을 대표한다는 가정에 의지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부산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한 신고율을 알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타 조사나 ICVS의 범죄피해조사에서 해당초 파악한 최후 사건을 기준으로 신고율을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준거기간 내의 파악된 모든 피해사건을 토대로 신고율을 계산한다. 따라서 부산조사에서는 신고율을 사건 혹은 개인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할 수 있다.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정확히는 신고자율이라는 표현이 맞다. 그러나 조사의 자료상황에서 여러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두 번 신고한 경우는 단지 3건으로 매우 드물었으므로, 개인을 기준으로 한 신고자율과 사건을 기준으로 한 신고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신고자율을 신고율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겠다.

34) 소득은 가구의 특징으로 파악하였으므로, 변수 성, 연령, 학력에 있어서와는 달리 직접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았다.

35) 전계논문 Mun, 2002, S. 234f.

가구일수록 신고자율이 높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4개의 소득층으로 나누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신고자율은 각각 18.8%, 21.7%, 22.7%, 40.0%로 점증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일 높은 소득층에서의 신고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부산조사에서 높은 소득층의 피해자가 동일한 소득층의 비피해자 보다 범죄의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았다. 따라서 높은 소득층의 높은 신고율은 주거침입절도 후 고조된 범죄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조사에서는 양변수관계로 보아 높은 소득층이 경찰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신고 후 경찰의 사건처리에 관하여도 만족하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득층의 신고율이 높았다. 이는 높은 소득층에 한하여서는 ‘경찰에 대한 태도’ 보다 ‘피해액’이 신고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부산조사에서 높은 소득층의 평균피해액은 낮은 소득층에 비해 높았다. 결국 경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도 피해액이 높으면 신고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II) 소개한 Schneider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높은 소득층에서는 범죄의 두려움과(주관적 심각성) 피해액이(객관적 심각성) 신고의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도표 8: 신고자의 특징>

특 징		신고율 (%)
성 별	여자	5.9
	남자	12.8
연령층별	16-29	6.8
	30-49	9.5
	50세 이상	12.9
교육수준별	낮다	9.1
	높다	8.7
소득수준별	하	12.8
	중하	13.3
	중상	18.3
	상	21.3

VI. 요약 및 제언

이론적으로 높은 신고율은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신고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였다. 국제평균을 고려하여, 정부가 신고율을 약 40% 정도로 높인다는 목표 자체를 설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조사의 결과를 본다면, 주민의 경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고, 경찰에 대한 평가와 신고율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ICVS 및 다른 국제비교를 위한 범죄피해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결국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긍정적 경찰상은 경찰자체만의 노력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형사사법기관 전반의 노력, 넓게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긍정적 경찰상을 위해 경찰은 특히 형평성에 유의해야 한다.

나라를 단위로 하여 만족율과 신고율의 정적 상관관계가($r = .67$) 확인되었다. 만족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신고율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신고 후 만족율은 17%였고, 부산에서는 27.9%로써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장기간의 노력이 중요하다. 만족여부는 경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r = .72$) 결국 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지위차이가설이 옳음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 경찰과 시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발로 뛰는 최일선 경찰인력의 고급화가 중요하다. 대학의 경찰관련학과 졸업자가 경찰관으로 충원되는 구조는 경찰인력의 고급화에 일정 기여할 것이다. 경찰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신고 후 가장 만족하지 못했으며, 개인범죄피해율은 가장 높으며, 신고율은 가장 낮은 집단이 젊은 연령층이었다. 젊은 연령층과의 접촉 시 이 사실을 경찰은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젊은 연령층과 경찰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개인범죄피해율이 가장 높은 이 집단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면, 전국적 신고율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단지 설문대상자의 응답에 따른다면, 부산조사에서 신고 후 만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의 성의 없는 사건처리’(77.4%)였다. 우리나라의 결과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최소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신고자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신고이유'로써 판단하건대, 보험가입자가 범죄피해자인 경우, 경찰에의 신고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신고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설문대상자의 응답에 따른다면, 부산조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가 적다'(37%)였다. 다음으로 경찰이 사건을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15%) 때문이었다. 신고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의 사건해결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신고율이 낮은 특수한 이유로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5%) 혹은 연하자일 경우(3%) 신고를 꺼렸다.

부산조사에서 객관적 심각성과 신고행위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었다. 피해액이 높을수록 신고될 확률이 높았다. 부산의 평균피해액은 서독에 비해 매우 낮았다. 따라서 부산의 낮은 신고율의 한 원인을 낮은 평균피해액에 돌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낮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여성에 중점이 주어진 대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그 곳의 높은 신고율은 적지 않게 여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부산조사 결과로 보건데, 여성의 낮은 신고율은 여성의 경찰에 대한 태도로써는 설명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경찰인력은(전·의경 포함) 신고율이 높은 나라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보다 오히려 더 많다. 따라서 신뢰받는 경찰상을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증원 보다 합리적인 인사 및 급여제도를 통한 일선 경찰관의 사기진작이 더 중요하다.

주제어 : 신고, 경찰, 범죄피해조사, 지위차이가설

[Zusammenfassung]

Einflussfaktoren der Anzeigeerstattung

Mun, Jang-II*

Mit dieser Studie wurde versucht, Einflussfaktoren der Anzeigeerstattung in Korea herauszufinden. Sie können zur Steuerung des Anzeigeverhaltens der Bevölkerung dienen. Zur Analyse wurden zwei Datensätzen benutzt. Einer ist der Datensatz des ICVS (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s), allerdings mit einer Auswahl. Hierin sind die Daten von Korea mit einer nationalen Stichprobe enthalten, die von dem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m Rahmen des ICVS gesammelt wurden. Der andere ist der Datensatz der im Jahr 1997 durchgeführten Pusaner Opferbefragung. Mit der Heranziehung des internationalen Vergleichs ist zu erwarten, dass die Einflussfaktoren der Anzeigeerstattung in Korea deutlich herauskristallisiert werden.

Unter den zur Analyse aufgenommene 70 Ländern waren die Anzeigequoten in Korea sehr niedrig. In den Ländern, wo die Bewertung der Polizei durch Bevölkerung negativ ausfällt, oder der Zufriedenheitsgrad der Opfer mit der Polizei bei der Anzeigeerstattung niedrig ist, ist die Anzeigequote niedrig. Es besteht einen jeweils sehr signifikanten linearen Zusammenhang zwischen der Bewertung der Polizei, dem Zufriedenheitsgrad und der Anzeigequote. Noch gehörten die Bewertung der Polizei und dem Zufriedenheitsgrad zur gleichen Dimension. Der Zufriedenheitsgrad in Korea war sehr niedrig unter den Ländern. Der überwiegende Teil der Befragten führte als Grund für die Unzufriedenheit an, dass 'die Sache von der Polizei nicht ernst genommen' worden sei. Es waren die Personen mit hohem

* Lecturer, Department of Law, Yeungnam University, Ph.D. in Law

sozialen Status, die bei direktem Kontakt mit den Polizeibeamten unzufrieden waren. Dies spricht für die Richtigkeit der Statusdiskrepanz-Hypothese. Es konnte ferner geschlossen werden, dass die sehr niedrige Anzeigebereitschaft nicht allein an dem mangelnden Vertrauen der Bürger gegenüber der Polizei liegt, sondern gegenüber den Kontrollorganen insgesamt. Dies hat zu niedrigen Erwartungen der Bürger an die Kontrollorgane geführt. Deswegen wird es gemeinhin nicht gelingen, wenn man für die Verbesserung des Images der Polizei allein auf die Institution Polizei abstellt. Aus dem Vergleich der Gründe für eine Anzeige war es deutlich, dass die Bevölkerung in Korea kaum aus Versicherungszwecken angezeigt hat. Als Grund für eine Nichtanzeige überwiegt die Angabe 'Schaden gering'. Mit den Pusaner Daten konnte noch die folgenden Kategorien identifiziert werden, die in dem Raum gelten: 'Täter ist aus der Umgebung/Schule/Arbeitsplatz', 'selber schuld' und 'häufiges Vorkommnis'. Diese Angaben nehmen bezüglich ihrer Anzahl einen mittleren Rang ein. Insbesondere die Kategorie 'Täter ist aus der Umgebung/Schule/Arbeitsplatz', die in ihrer Häufigkeit bereits den 4. Rang einnimmt, drückt aus, dass die Bevölkerung eine Anzeige meidet, wenn sie den Täter implizit kennt. Dies lässt sich mit der Identitätstheorie erklären. Subjektive Einschätzung der Schadensschwere konnte die unterschiedlichen Anzeigekoten der Deliktsarten relativ gut erklären. Im allgemeinen gilt: Je schwerer sie ist, desto höher die Anzeigekote. Sie konnte aber die unterschiedlichen Anzeigekoten nach den Ländern nicht erklären. Die Schadenshöhe bei den Eigentumsdelikten war ein wichtiger Faktor für das Anzeigeverhalten. Es konnte bestätigt werden, dass Schadenshöhe und Anzeigekote in einem positiven linearen Zusammenhang stehen. In bezug auf soziodemographische Merkmale der Anzeigerstatter ergab sich, dass Männer häufiger Anzeige erstatteten als Frauen. Es besteht eine leichte Tendenz dahingehend, dass Alter und Einkommen mit der Anzeigerstattung in einem positiven linearen Zusammenhang stehen.